

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 지원기관 지정 고시

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0조제9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를 수행할 기관(단체)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고시합니다.

2024년 11월 12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목 적

-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0조제9항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전문 기관/단체 지정

2. 지정기관

기관/단체	대표자	
대한주택관리사협회	하원선	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44 벽산디지털 밸리 5차 1514호

3. 지정업무

-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
-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업무

4. 지정기간 : 지정 고시일부터 변경 지정고시일까지